

# 조정 급부 지급확인서 기재 요령

- 굵은 선 안쪽의 해당항목을 검은색 볼펜 등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 지워지는 타입의 볼펜이나 연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체를 희망하는 계좌정보를 기입하십시오.  
※ 본인명의로 아닌 계좌로 이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대리인]란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수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기입하십시오.

### 1 이체계좌 정보

급부금 이체를 희망하는 계좌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대리인이 수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계좌정보)  
(동장 등의 사본(복사)을 뒷면에 첨부해 주십시오, 장기인입출금이 없는 계좌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금융기관명	지점명	분류	계좌번호 (금융기관수가 가장 오른쪽 칸에 오른쪽 기입하십시오.)	계좌명의(가타카나) (통장의 표지와 동일하게 기입하십시오.)
○○○ 금융기관번호 000000	○○○ 지점번호 0000	○○○ 본인명 분리계좌 출입금 2명까지 가능	00000000000000000000	フクオカ ○○○
유초은행	통장기준 의식지정인 경우에는 글자취소용 화면에 기입하십시오.	통장번호	계좌명의(가타카나) (통장의 표지와 동일하게 기입하십시오.)	
유초은행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지급통장 및 표지 안쪽에 실려있는 또는 현금카드에 기재된 기호-번호를 기입하십시오.	1 0	00000000000000000000		

(\*) 금융기관의 계좌가 없거나 금융기관과 일치하지 않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분은 콜센터(0120-835-2510)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리인이 수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대리인]란에 기입하십시오.

(가타카나 표기) 대리인 성명	본인과의 관계	대리인 생년월일	대리인 현주소
福岡 △△△	□□	0년 00월 00일	福岡市○○区○○丁目○○ 전화 000-(000) 0000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급부금의 수급을 위임합니다.			서명 福岡 ○○

### 2 본인 확인란

성명, 확인일, 전화번호를 기입하십시오.  
기재내용에 이의 없습니다.

성명	확인일	전화번호
福岡 ○○	0년 00월 00일	000-000-0000

### 제출서류

- 조정 급부 지급확인서  
필요사항을 기입하십시오.
- 이체계좌(앞면 우측 상부)  
□ 성명, 확인일, 전화번호(앞면 우측 하부)
- 본인(대리인) 확인서류 사본(복사)  
※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국민연금카드(원본), 현금수표, 계좌보통증, 여권 중 어느 하나의 사본(복사)을 뒷면 본인확인서류 등 첨부서류에 첨부하십시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체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복사)  
이체계좌의 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계좌명의(가타카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이나 현금카드 사본(복사)
-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으로 수급하는 경우)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본(복사)  
호적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법원이 결정된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사본(복사)을 동봉하십시오.

※ 미비한 기입 능력, 제출서류 미비가 없는지(기입 능력, 제출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수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성명, 확인일, 전화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제출서류에 미비가 없는지 잘 확인하고  
체크마크를 기입(☑)해 주십시오.

문의용 ID  
패스워드  
문의를 ID-패스워드는 반드시 세로에 도시기 바랍니다.  
위에 기재된 문의용 ID-패스워드는 문의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때 필요합니다.  
-사후처리에 필요하신지 알려주세요.

## 조정 급부 지급 확인서

조정 급부는 2024년도에 실시하는 소득세, 개인 시현인세 소득월액의 정액감세액이 2024년도의 추계소득세 또는 2024년도 개인 시현인세 소득월액을 상회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상회금액의 합산액을 바탕으로 1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신청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귀하는 과세상황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지급액정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 확인서와 본인확인서류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심사 후 다음과 같이 급부금을 계좌이체합니다.  
**[제출기한: 2024년 9월 30일 ※소인 유효]**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공공이체계좌를 등록하신 분은  
온라인 신청을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본 확인서와  
본인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조정 급부 지급액 및 산출식

소득세	정액감세 가능액 (3만원* (본인+부양가족수))	2024년도분 추계소득세액	소득세분 공제부족액 (㉑)
개인 시현인세 소득월액	정액감세 가능액 (1만원* (본인+부양가족수))	2024년도 개인 시현인세 소득월액	개인 시현인세 소득월액 공제부족액 (㉒)
조정 급부	소득세분 공제부족액 (㉑)	개인 시현인세 소득월액 공제부족액 (㉒)	공제부족액 계 (㉓) (㉑+㉒)

(주) \*부양가족수에는 동일생계 배우자(소득세),  
공제대상 배우자(개인 시현인세),  
만 16세 미만의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

조정 급부 지급액  
(상기 ㉓을 1만원 단위로 절상)

\* 2024년도분 추계소득세액(공)의 수치는 원시정액이 입수가능한 2023년도분 소득 등에 기초한 추계액을 기재했습니다. 2024년도분 소득세액이 파악되었을 때 급부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2025년 이후에 추가로 급부를 예정입니다.  
※ 수급 종료 후 개인 시현인세 변경이외 급부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2025년 이후에 추가로 급부를 예정입니다.  
※ 신청, 청부서류 확인 등으로 인해 재확인세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류 접수가 집중하는 시기에선 지급이 지연될 경우가 있습니다.  
※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기 기재하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급부금 지급을 시회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급부금을 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확인란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급부금을 수급하지 않겠습니다.]